

청년안심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

신풍역 비스타동원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,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.

<혼인으로 구성될 세대>

※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'분리세대'에 체크하고,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하십시오.

| 신청인과의 관계 | 성명 | 주민등록번호 | (예정) 세대주의관계 | 비고 |
|----------|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|
| 본인 | | - | (예시)본인 | 동일세대□ 분리세대□ |
| 배우자 | | - | (예시)배우자 | 동일세대□ 분리세대□ |
| | | - | | 동일세대□ 분리세대□ |
| | | - | | 동일세대□ 분리세대□ |

2024년 월 일

신청자 1 대표 신청인 : (서명 또는 인)
신청자 2 예비 배우자 : (서명 또는 인)